

트래블룰 적용 의의와 국내 가상자산 업계 동향



- □ 가상자산 거래와 자금세탁 현황
- □ 국내외 트래블룰 관련 제도
- □ 트래블룰 적용에 따른 국내 가상자산 업계 동향
- □ 트래블룰 솔루션의 구조와 프로세스, 한계점

□ 시사점

KB 금융지주 경영연구소 www.kbfg.com/kbresearch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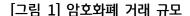
< 요 약 >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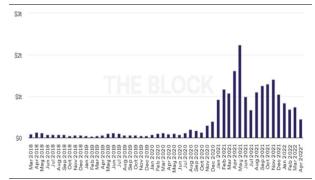
- □ 지난해 글로벌 가상자산 거래량은 기관의 대규모 투자가 증가하고 개인 거래가 대중화되면서 2020년 대비 급증한 것으로 나타남
 - 클라이언트 서버 방식으로 운영되는 중앙화 거래소의 2021년 암호화폐 거래량은 14조 7,000억 달러를 기록
- □ 가상자산 거래가 증가할수록 암호화폐를 활용한 자금세탁 관련 범죄도 증가하는 양상
 - 지난해 자금세탁에 투입된 암호화폐의 총가치는 86억 달러로 2020년 66억 달러 대비 약 30% 증가한 것으로 추정
- □ 가상자산을 이용한 자금세탁 문제가 부상하면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산하 국제자금세탁방지기구(FATF)는 가상자산 트래블룰(Travel Rule) 권고안의 내용과 적용 범위를 확장함
 - 2019년 FATF는 기존 트래블룰 권고안을 확장해 세계 각국이 가상자산과 가상자산 서비스 제공업체 (VASP)에 관련 규정을 적용할 것을 제안했으며, 2021년 10월에는 상대적으로 규제가 취약한 국가 내 VASP의 사업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해 수정된 지침을 발표
 - 트래블룰이란 자금세탁을 방지하기 위해 기존 금융권에 구축된 자금이동추적시스템을 활용해 은행들이 해외 송금 시 국제은행간통신협회(SWIFT)가 요구하는 형식에 따라 송금인의 정보 등을 기록하는 규정을 의미
- □ 한국은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시행령 개정안을 마련하고 전 세계에서 가장 먼저 가상자산 거래에 트래블룰을 의무적으로 적용(2022년 3월 25일부터 시행)
 - 정부가 국제적인 규약이 완성되기 전에 발 빠르게 법안을 마련하고 통과시키는 바람에 최소한의 가이 드라인조차 마련되지 않은 상태이며, 이로 인해 다양한 부분에서 시행착오와 부작용이 발생
- □ 업비트, 빗썸, 코인원, 코빗 등 국내 주요 거래소들은 트래블룰에 대해 '화이트리스트(White List)'와 '솔루션 구축'의 투 트랙으로 대응하고 있지만 거래소별 세부적인 정책 기준은 상이
 - 거래소에 적용되는 화이트리스트 방식이란 소유자 신원이 확인된 외부 지갑을 등록하고, 확인된 지갑 사이에만 가상자산 거래를 허용하는 방식(현재 대부분 본인 계좌로 한정)
 - 국내 주요 거래소들은 가장 중요한 트래블룰 관련 솔루션 구축에 대해 서로 이해관계가 엇갈리면서 독자 노선을 걷고 있는 모습. 베리파이바스프(VerifyVASP) 대 코드(CODE)의 대결 양상
- □ 베리파이바스프는 비(非)블록체인 솔루션인 반면, 코드는 원래 블록체인 기반 솔루션으로 개발 되었으나 국내 최대 가상자산 거래소 업비트와 거래를 연동하기 위해 비블록체인으로 재개발
- □ 한국이 세계 최초로 가상자산 거래에 트래블룰을 적용한 것은 가상자산 산업을 제도권으로 편 입하는 계기가 되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지만 여러 면에서 보완이 필요
 - 국내 대다수 가상자산 투자자가 국내 거래소를 이용하는 상황에서 트래블룰 의무 적용은 자금 이동 추적에 긍정적으로 작용할 전망
 - 금융위원회는 올 상반기 전문가와 함께 태스크포스팀을 구성하고 트래블룰 개선안을 마련할 계획



■ 가상자산 거래와 자금세탁 현황

- O 지난해 글로벌 가상자산 거래량은 기관의 대규모 투자가 증가하고 개인 거래가 대중화되면 서 2020년 대비 급증한 것으로 나타남
 - 글로벌 가상자산 시장 데이터 분석 업체 크립토컴페어(CryptoCompare)에 따르면 2021 년 클라이언트 서버 방식으로 운영되는 중앙화 거래소의 암호화폐 거래량은 14조 7,000억 달러를 기록
 - 이는 2020년 1조 8,000억 달러 대비 8배 이상 증가한 수치. 세계 최대 가상자산 거래소 바이낸스(Binance)는 지난해 9조 8,000억 달러의 거래량을 기록하며 전체의 67%를 차지
 - 정확한 거래량을 보고하는 것으로 알려진 가상자산 거래소들의 데이터만 반영한 수치 이므로 실제 거래량은 이보다 많은 것으로 예상
 - 지난해 개인 간 거래 방식으로 운영되는 탈중앙화 거래소의 거래량도 2020년 대비 8배 증가한 1조 달러로 추정
- ㅇ 가상자산 거래가 증가할수록 암호화폐를 활용한 자금세탁 관련 범죄도 증가하는 것으로 조사
 - 블록체인 데이터 분석 기업 체이널리시스(Chainalysis)에 따르면 지난해 자금세탁에 투입된 암호화폐의 총가치는 86억 달러로 2020년 추정치인 66억 달러보다 약 30% 증가
 - 이 중 약 17%가 상대적으로 보안이 취약한 탈중앙화 거래소에서 거래가 이루어짐. 이 는 2020년 2% 대비 대폭 증가한 수치
 - 탈중앙화 거래소는 모든 데이터와 거래 정보를 중앙 서버가 아닌 개인 지갑에 분산해 저장하므로 중앙화 거래소에 비해 고객 익명성, 가상자산 거래 내역 위·변조, 암호키 유출로 인한 보안 사고 발생 가능성이 매우 높음





자료: 크립토컴페어

[그림 2] 자금세탁된 암호화폐(추정치)1



자료: 체이널리시스, 작성자 재구성

^{1 2019}년 역사상 최대 규모의 암호화폐 사기 사건 '플러스 토큰' 사태가 발생했으며 피해 금액은 40억 달러로 추정



■ 국내외 트래블룰 관련 제도

- 가상자산을 활용한 자금세탁 문제가 부상하면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²) 산하 국제자금세탁 방지기구(FATF³)는 신기술과 트래블룰(Travel Rule) 권고안 내용과 적용 범위를 확장함
 - 2019년 FATF는 기존 권고안을 확장해 세계 각국이 가상자산과 가상자산 서비스 제공업체 (VASP⁴)에 관련 규정을 적용하도록 제안했으며, 2021년 10월에는 상대적으로 규제가 취약한 국가 내 VASP의 사업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해 개선된 지침⁵을 발표
 - 트래블룰이란 자금세탁을 방지하기 위해 기존 금융권에 구축된 자금이동추적시스템을 활용해 은행들이 해외 송금 시 국제은행간통신협회(SWIFT)가 요구하는 형식에 따라 송금인의 정보 등을 기록하는 규정을 의미
 - FATF의 가상자산 트래블룰 수정 권고안의 주요 내용은 표1과 같음

[표 1] FAFT 가상자산 트래블룰 수정 권고안의 주요 내용

| 지침 번호 | 내 용 | |
|---------|---|--|
| 권고안 16 | 국가는 VASP가 가상자산 송금과 연관된 정확한 송금인 정보와 수취인 정보를 획득하고 | |
| | 보유하도록 해야 함 ⇒ 권고안 16의 정의 | |
| 권고안 175 | 권고안 16과 관련 내용 해석 노트는 테러리스트나 기타 범죄자가 자금 이동을 위해 전 | |
| | 자적인 자금 이체에 제한 없이 접근하는 것을 방지하고 오용이 발생할 경우 이를 감지 | |
| | 하기 위해 개발됨 | |
| | FATF 권고안의 기능적 접근 방식에 따라 전신 송금 및 권고안 16과 관련된 요구 사항 | |
| | 은 해당 서비스의 모든 제공자에게 적용되며, 여기에는 전신 송금과 기능적으로 유사한 | |
| | 서비스를 제공하거나 가상자산 송금을 제공하는 VASP도 포함됨 | |
| | ⇒ 권고안 16의 궁극적인 목적은 자금세탁 방지이며 이와 관련된 요구 사항은 전통적인 | |
| | 전신 송금과 가상자산 송금의 모든 기관에게 적용되어야 함을 명시 | |
| | 국가는 가상자산 송금과 VASP에 권고안 16을 적용해야 하며, 전통적인 전신 송금과 가 | |
| 권고안 178 | 상자산 송금이 법정통화로 표시되는지 여부에 상관없이 권고안 16을 적용해야 함. | |
| | 가상자산에 FATF의 전신 송금 요구 사항을 적용한 것이 트래블룰 | |
| | ⇒ 전통적인 전신 송금과 가상자산 송금에는 권고안 16이 적용되어야 하며(지침 175와 | |
| | 유사) 전신 송금의 자금세탁 방지 요구 사항을 가상자산에 적용한 것을 트래블룰로 정의 | |

² Organization for Economic Cooperation and Development

³ Financial Action Task Force on money laundering

⁴ Virtual Asset Service Provider

⁵ Virtual Assets and Virtual Asset Service Providers(FATF, October, 2021)



| 권고안 179 | 권고안 16의 요구 사항은 VASP가 법정화폐나 가상자산으로 거래할 때마다 적용됨. ①전통적인 전신 송금 ②VASP와 다른 의무 법인 사이 가상자산 거래 ③VASP와 비의무 법인(개인 지갑) 사이 가상자산 거래. ①과 ②에는 트래블룰이 적용되지만 ③에는적용되지 않으며 국가는 모든 가상자산 송금을 국가 간 전신 송금으로 취급해야 함 FATF는 트래블룰의 적용 범위를 전통적인 전신 송금과 VASP 사이 가상자산 거래로한정함. 반면 VASP와 개인 지갑 사이 거래는 규제 대상에 포함시키지 않자 국내 가상자산 업계는 화이트리스트(White List) 방식으로 이에 대응 |
|---------|--|
| 권고안 180 | 가상자산 송금과 관련된 거래 수수료는 트래블룰 적용 범위에 포함되지 않음 ⇒ 가상자산 송금 수수료율은 각 거래소가 자율적으로 결정(5월 27일 현재 0.05%~ 0.25%, 4대 거래소 평균 0.175%) |
| 권고안 182 | 송금기관이 보관해야 할 필수 정보는 다음과 같음 ① 주민등록상 송금인 이름 ② 거래 처리에 사용된 송금인의 계좌번호. 가상자산의 경우 가상자산 지갑 주소 ③ 송금인의 거주지 주소, 주민등록번호, 고객식별번호, 생년월일과 출생지 ④ 수신인 이름(송금기관에 정확성 검증 의무는 없지만 STR ⁶ 모니터링을 위해 검토) ⑤ 거래 처리에 사용된 수취인의 계좌번호. 가상자산의 경우 가상자산 지갑 주소 → FATF는 송금기관이 보관해야 할 필수 정보를 정의하고 있으며, 가상자산 거래의 경우 가상자산 지갑 주소를 추가. 한편 필수 정보의 의무 보관 기간은 따로 명시하지 않고 각국에서 자율적으로 결정할 수 있는 선택권을 부여 |
| 권고안 183 | 수취기관이 보관해야 할 필수 정보는 다음과 같음 ① 송금인 이름(수취기관에 정확성 검증 의무는 없지만 STR 모니터링을 위해 검토) ② 거래를 처리하는 데 사용된 송금인 계좌번호. 가상자산의 경우 가상자산 지갑 주소 ③ 주민등록상 송금인 주소, 주민등록번호, 고객식별번호, 생년월일과 출생지 ④ 수신인 이름(수취기관은 송금기관이 전달한 수취인 이름과 계좌번호 검증 의무가 있음) ⑤ 거래 처리에 사용된 수취인의 계좌번호. 가상자산의 경우 가상자산 지갑 주소 ⇒ FATF는 수취기관이 보관해야 할 필수 정보를 정의하고 있으며, 가상자산 거래의 경우 가상자산 지갑 주소를 추가. 한편 필수 정보의 의무 보관 기간은 명시하지 않고 각국에서 자율적으로 결정할 수 있는 선택권 부여 |
| 권고안 191 | 국가는 다양한 가상자산 거래와 관련된 위험을 고려해 FATF 표준에 따라 USD 1,000 달러 혹은 EUR 1,000유로의 가상자산 송금에 대한 최소 임계값을 채택할 수 있음 ⇒ FATF는 가상자산 거래의 필수 정보를 공유하는 최소한의 기준 금액을 USD 1,000 달러 혹은 EUR 1,000유로로 정의. 참고로 국내 기준 금액은 100만 원 |

자료: FATF, 작성자 재구성

⁶ Suspicious Transaction Report, 혐의거래보고제도. 금융기관이 고객 거래에서 자금세탁 등 의심스러운 사항을 발견하는 경우 관련 기관에 보고하는 제도. 현재 한국은 금융정보분석원(FIU)에 의무적으로 보고해야 하며, 고액현금 거래보고(CTR), 고객주의의무(CDD)와 함께 자금세탁방지제도를 구성



- O 세계 주요 국가는 FATF의 트래블룰 수정 권고안을 적극 수용하며 관련 규정 입법화 단계
 - 스위스와 한국은 각각 금융시장감독청의 「자금세탁방지조례」와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이하 특금법)을 개정
 - 미국과 싱가포르는 「전환 가능한 가상통화와 관련된 특정 비즈니스 모델에 대한 FinCEN⁷ 규제 적용」과 「지불 서비스 라이선스 보유자에 대한 통지」등의 규정을 제안

[표 2] FATF 권고안에 대한 주요국 관련 규정(안)

| [표 2] FAIF 전고인에 대한 구요국 전단 규경(인) | | | | |
|---------------------------------|---------------|---------------|---------------|--------------|
| 구 분 | 미국 | 스위스 | 싱가포르 | 한국 |
| 정보 공유 기준 | • USD 3,000달러 | • CHF 1,000프랑 | • SGD 1,500달러 | • KRW 100만 원 |
| | • 이름 | • 이름 | • 이름 | • 이름 |
| | • 계좌번호 | • 계좌번호(지갑 주소) | • 계좌번호(지갑 주소) | • 지갑 주소 |
| 송금인 정보 | • 개인식별번호 | • 개인식별자 | • 개인식별자 | • 개인식별자 |
| | • 송금 VASP 정보 | (거주지 주소, 고객 | (거주지 주소, 신분 | (주민등록번호, |
| | • 송금액, 날짜 등 | 번호 등) | 증번호, 여권 등) | 사업자등록번호 등) |
| | • 이름 | • 이름 | • 이름 | • 이름 |
| 수취인 정보 | • 계좌번호 | • 계좌번호 | • 계좌번호 | • 지갑 주소 |
| 구 제 간 ' () 포 | • 수취 VASP 정보 | (혹은 거래 관련 | (지갑 주소) | |
| | • 모든 고유식별자 | 참조번호) | | |
| 정보 공유 | • 거래 즉시 정보 공유 | • 명시하지 않았지만 | • 거래 즉시 혹은 | • 거래 즉시 혹은 |
| 시점 | | 최소 3영업일 이내 | 3영업일 이내 | 3영업일 이내 |
| | • 송금기관 VASP는 | • 정확성 검증에 대한 | • 송금인, 수취인 | • 송금인, 수취인 |
| | 송금인 정보의 | 책임은 언급 안 함 | 정보를 수취기관 | 정보를 수취기관 |
| | 정확성을 검증하고 | • 각 VASP는 제재 | VASP에 제공하고 | VASP에 제공, |
| | 수취기관 VASP는 | 대상 감시 목록을 | 해당 기관은 STR의 | 정확성 검증에 대한 |
| | 수취인 정보를 검증 | 필터링하고 필요한 | 결제정보를 확인 | 책임은 법에 미언급 |
| | • 각 VASP는 제재 | 경우 의심 거래 보고 | • 각 VASP는 제재 | • 각 VASP는 제재 |
| 필요 조치 | 대상 감시 목록을 | (보고 기한에 대한 | 대상 감시 목록을 | 대상 감시 목록을 |
| | 필터링하고 필요한 | 언급은 없음) | 필터링하고 필요한 | 필터링하고 필요한 |
| | 경우 즉시 의심 거 | • 각 VASP는 최소 | 경우 3영업일 이내 | 경우 즉시 의심 거 |
| | 래 보고 | 10년 동안 정보를 | 의심 거래 보고 | 래 보고 |
| | • 각 VASP는 최소 | 의무 보관 | • 각 VASP는 최소 | • 각 VASP는 최소 |
| | 5년 동안 정보를 | | 5년 동안 정보를 | 5년 동안 정보를 |
| | 의무 보관 | | 의무 보관 | 의무 보관 |

자료: 한국블록체인협회, 작성자 재구성

⁷ Financial Crimes Enforcement Network, 금융 범죄 단속 네트워크



- O 한국은 특금법 시행령 개정안을 마련하고 세계에서 가장 먼저 가상자산 거래에 트래블룰을 의무적으로 적용
 - 당초 2021년 3월 25일 특금법 시행과 함께 적용될 예정이었지만, 가상자산 사업자 사이 정보 공유 시스템 구축에 시간이 필요하다는 이유로 1년 후인 2022년 3월 25일부터 적용

[표 3] 가상자산 트래블룰 관련 특금법 시행령 개정안 주요 내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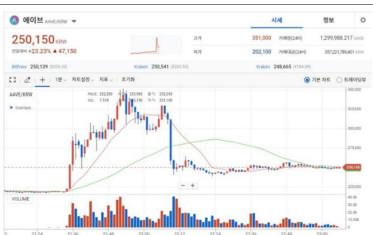
| | 표 3] 가정자산 트대들물 판단 득급입 시행명 개정안 주요 내용 | |
|--|---|--|
| 구 분 | 내 용 | |
| 특금법 제6조 (적용 범위 등) | 이 장은 가상자산 사업자에 대해 적용한다. 가상자산 사업자의 금융 거래 등에 대해서는 국외에서 이루어진 행위로서 그효과가 국내에 미치는 경우에도 이 법을 적용한다. 가상자산 사업자에 대해 제5조의3을 적용하는 경우 정보 제공의 대상·기준·절차·방법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
| 특금법 제5조의3 (전신 송금 시 정보 제공) | ① 금융회사 등은 송금인이 전신 송금(電話念金, 송금인의 계좌 보유 여부를 불문하고 금융회사 등을 이용해 국내외 다른 금융회사 등으로 자금을 이체하는 서비스를 말한다)의 방법으로 500만 원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상을 송금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송금인 및 수취인에 관한 정보를 송금받는 금융회사 등(이하 '수취 금융회사'라 한다)에 제공해야한다. | |
| 특금법 시행령 제10조의10 (가상자산 이전 시 정보 제공) | 법 제6조 제3항에 따라 가상자산 사업자에 대해 법 제5조의3을 적용하는 경우 고 정보 제공에 관해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1. 정보 제공은 금융정보분석원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환산 기준에 따라 가상자산 사업자가 다른 가상자산 사업자에게 100만 원 이상에 상당하는 가상자산을 이 전하는 경우에 할 것 2. 가상자산을 이전하는 가상자산 사업자는 가상자산을 이전받는 가상자산 사업자에게 다음 각 목의 정보를 제공할 것 가. 가상자산을 보내는 고객과 가상자산을 받는 고객의 성명(법인·단체의 경우법인·단체 명칭과 대표자 성명을 말한다.) 나. 가상자산을 보내는 고객과 가상자산을 받는 고객의 가상자산 주소(가상자산의 전송 기록과 보관 내역 관리를 위해 전자적으로 생성시킨 고유식별번호를 말한다.) 3. 금융정보분석원장 혹은 가상자산을 이전받는 가상자산 사업자가 요청하는 경우에는 가상자산을 보내는 고객의 주민등록번호(법인의 경우에는 법인등록번호를 말한다) 또는 여권번호·외국인등록번호(외국인만 해당한다)를 제공할 것 4. 제2호에 따른 정보는 가상자산을 이전하는 경우에 함께 제공하고, 제3호에 따른 정보는 정보 제공을 요청받은 날부터 3영업일 이내에 제공할 것 | |

자료: 국가법령정보센터



■ 트래블룰 적용에 따른 국내 가상자산업계 동향

- O 2021년 10월 발표된 FATF의 가상자산 트래블룰 수정 권고안이 최신 기술의 변화를 완벽하게 반영하지 못했다는 지적이 제기되는 가운데, 한국은 2022년 3월 25일 전 세계에서 가장 먼저 가상자산 거래에 트래블룰을 적용
 - 정부가 국제적인 규약이 완성되기 전에 발 빠르게 법안을 마련하고 통과시키는 바람에 현 재 특금법 시행령 개정안에는 FATF의 트래블룰 수정 권고안 내용이 반영되어 있지 않음
 - 가상자산 트래블룰 표준안과 최소한의 가이드라인도 마련되어 있지 않다 보니 다양한 부분에서 시행착오와 부작용이 발생하며 관련 시장은 혼란스러운 모습
 - 이는 정부가 가상자산을 육성 대상이 아니라 규제가 필요한 투기성 짙은 산업으로 보기 때문
- O 우선 거래소 사이 가상자산 이동과 개인 지갑의 입출금이 경우에 따라 제한되며 일부 알트 코인⁸에 대한 가격 왜곡 현상 발생
 - 가상자산 시장은 대표적인 국경 없는 경제 분야이며 거래소나 개인 지갑으로 가상자산을 전송하면 언제 어디서든 자유롭게 거래할 수 있음
 - 시세 차이를 이용한 재정거래(Arbitrage Transaction, 차익거래)가 활발하게 이뤄지 면서 전 세계에서 비슷한 시세가 형성됨
 - 반대로 어느 한곳에서 입출금이 막히면 이 틈을 타서 일부 세력이 가상자산 가격을 끌어올리면서 거래소 간 시세 차이가 커져 투자 위험이 증가. 이렇게 투자 심리를 부추 겨 일반 개인 고객을 끌어모으는 행위를 '가두리 펌핑'이라 함



[그림 3] 가상자산 에이브의 '펌핑 앤 덤핑' 그래프

자료: 업비트

-

⁸ Altcoin, 비트코인을 제외한 모든 암호화폐



- 개인 지갑의 입출금이 일부 제한되면서 단기간에 알트코인 가격이 급등락하는 '펌핑 앤 덤 핑(Pumping and Dumping)' 현상은 국내에서 빈번히 발생할 것으로 예상
- 더불어 트래블룰 적용 이후 국내 가상자산 시세가 해외보다 1%가량 낮게 형성되는 '역김 치프리미엄'이 발생한 것에 대해 시장의 우려 확산
 - 그동안 국내에서는 거래소에서 거래되는 가상자산의 공급량 대비 시장에 유입되는 자금 수요가 상대적으로 많아 '김치프리미엄'이 발생
 - 트래블룰 적용 이후 발생한 역김치프리미엄은 국내 가상자산 수요가 해외로 유출되어 관련 시장이 위축되고 있음을 의미
- O 업비트, 빗썸, 코인원, 코빗 등 국내 주요 거래소들은 트래블룰에 대해 '화이트리스트'와 '솔루션 구축'의 투 트랙으로 대응하고 있지만, 현재 최소한의 가이드라인도 마련되어 있지 않아 거래소별 세부적인 정책 기준은 상이
- 이 특히 국내 주요 거래소들은 가장 중요한 트래블룰 관련 '솔루션 구축'에 대해 서로 이해관계가 얼굴리면서 결국 자신에게 이익이 되는 방향으로 기준을 정하고 독자 노선을 걷는 모습
 - 지난해 7월 업비트가 국내 4대 가상자산 거래소(업비트, 빗썸, 코인원, 코빗)의 솔루션 합작법인 코드(CODE)에서 탈퇴함과 동시에 관계사 람다256이 개발한 베리파이바스프 (VerifyVASP) 솔루션 활용 계획을 발표한 것이 대표적인 예
 - 솔루션 구축에 대한 명확한 기준이 마련되어 있지 않은 가운데, 시장점유율 약 80%를 차지하며 국내 가상자산 시장을 독점하고 있는 업비트의 합작법인 탈퇴는 예정된 수순

[표 4] 화이트리스트와 솔루션 구축 비교

| 구 분 | 화이트리스트 | 솔루션 구축 |
|-----|---|---|
| 개 념 | 소유자 신원이 확인된 외부 지갑을 등록, 확인된 지갑 사이에만 가상자산 거래를 허 용하는 것(현재 대부분 본인 계좌로 한정) | FATF의 가상자산 트래블룰을 충족시키기 위해 별도로 개발된 가상자산 거래 시스템 |
| 대 상 | 외부 지갑(타 거래소와 개인 지갑) | 국내 거래소 |
| 목 적 | 외부 지갑과의 원활한 거래 지원 | 신원 확인 정보와 거래 관련 데이터 저장 |
| 한계점 | | 트래블룰을 적용받는 KRW 100만 원 이상 거래의 경우, 화이트리스트 방식의 지갑 주 소 등록이 필수 |

자료: 작성자 재구성



- 실명 계좌 관련 제휴를 맺은 금융기관도 업비트는 인터넷 전문은행인 케이뱅크인 반면 빗썸, 코인원과 코빗은 전통적 금융기관인 NH농협은행과 신한은행으로, 제휴 금융기관 이 요구하는 자금세탁 방지 수준도 제각각
- 솔루션 구축 방향도 상이. 베리파이바스프는 확장성에 중점을 둔 반면 코드는 보안성 에 주력하고 있다는 것이 업계의 중론

[표 5] 국내 주요 가상자산 거래소별 트래블룰 대응 내용

| [표 3] 국내 구표 기정시인 기대조를 드대들을 내중 내용 | | | | |
|----------------------------------|--|---|---|---------------|
| 구 분 | 업비트 | 빗썸 | 코인원 | 코빗 |
| 시스템 | 베리파이바스프 | 코드 | 코드 | 코드 |
| 적용 금액 | KRW 100만 원 이상 | 모든 금액(추후 변동) | KRW 100만 원 이상 | KRW 100만 원 이상 |
| 거래 가능 거래소 | 빗썸, 코인원, 코빗, 고팍스 등 19개 ③ 해외 거래소 (계정주 확인 서비스)⁹ 바이낸스, OKX, FTX 등 12개 | 코인원, 코빗, 업비트 등 15개 베리파이바스프와 연동 완료(4월25일) 해외 거래소 바이낸스, FTX, 코인베이스 등 16개 | 코드 솔루션을 사용하는 VASP 베리파이바스프와연동 완료(4월25일) 해외 거래소 바이낸스 FTX,코인베이스 등 | 업비트 등 14개 |
| 등록 가능한 개인 지갑 | • 본인 계정, 명의로 | 클립, 페이코인월렛 • 본인 지갑 주소임을 | 립, 페이코인월렛 등 • 본인 지갑 주소임을 증명하고 회사가 | • 본인 지갑 주소임을 |

자료: 각 사 홈페이지, 작성자 재구성(5월 27일 기준)

⁹ 베리파이바스프 트래블룰 솔루션을 통해 VASP 간 시스템을 연동해 업비트 계정과 연동된 거래소의 계정, 즉 상호 계정의 계정주 동일 여부를 확인하는 서비스(계정주 확인이 더 빠르게 진행되어 입출금 소요 시간 단축)

¹⁰ 메타마스크, 이더리움 개인 지갑을 편리하고 안전하게 관리할 수 있는 구글의 확장 프로그램



- 트래블룰 적용을 불과 한 달 앞두고 정부가 베리파이바스프와 코드 솔루션의 연동을 요구 하면서 문제점이 발생
 - 당시 베리파이바스프는 비블록체인 솔루션인 반면 코드는 블록체인 솔루션이었기 때문 에 상호 연동이 불가능
 - 양측은 서로 자사 솔루션 적용을 주장하며 갈등을 일으키다 코드가 비블록체인 기반 솔루션을 개발하기로 합의하면서 사태는 일단락됨
 - 하지만 촉박한 개발 일정으로 트래블룰 적용 초기인 3월 25일 이후 한 달 동안 베리 파이바스프와 코드 사이 가상자산 이동이 막히는 사고가 발생하면서 다수 고객이 해외 거래소로 유출
- O 한편 지난 4월 25일 이후 국내 주요 거래소의 베리파이바스프와 코드 솔루션 거래 연동이 완료되고 가상자산 이전이 가능한 해외 거래소도 늘면서 고객 불편은 다소 해소되는 모습
 - 트래블룰 적용 이후 발생한 역김치프리미엄은 5월 27일 현재 국내 가상자산(비트코인 기준) 가격이 2.1~2.3% 정도 높게 형성되는 김치프리미엄으로 전환
 - 그러나 암호화폐 거래 사이트 코인마켓캡(Coinmarketcap)에 따르면 4월 국내 가상 자산 거래량은 약 171조 원으로 3월 대비 13% 하락했으며 일평균 거래량도 3월 대비 10.4% 하락한 5조 7,027억 원을 기록
 - 이는 가상자산 가격이 하락한 이유도 있지만 트래블룰 적용으로 시장이 위축된 것이 주요 원인으로 분석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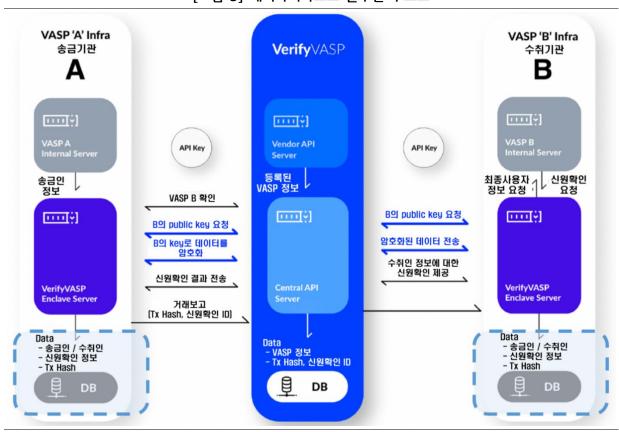
[그림 4] 국내 4대 가상자산 거래소 거래량 추이

자료: 블록미디어



■ 트래블룰 솔루션의 구조와 프로세스, 한계점

- O 업비트 관계사 람다256의 베리파이바스프는 FATF의 가상자산 트래블룰 준수를 위한 일종 의 프로토콜
 - 베리파이바스프는 가상자산 송금인과 수취인 신원 확인 정보의 즉각적인 공유를 위해 자신 들의 VASP 연합에 API¹¹를 제공
 - 가상자산 송금인이 본인 정보와 수취인 정보를 입력한 후 송금을 진행하면 송금기관은 이 정보를 수취인의 공개키(public key)로 암호화해 전송
 - 수취기관은 전송받은 암호화된 송금 정보를 수취인의 개인키(private key)로 복호화해 확인한 후 송금 거래를 완료하고 관련 정보를 보관
 - 베리파이바스프의 센트럴 API 서버(Central API Server)와 송금기관과 수취기관의 베이파이바스프 엔클레이브 서버(VerifyVASP Enclave Server)를 통해 신원 확인 정보 포함해 다양한 API와 거래 데이터를 주고받음



[그림 5] 베리파이바스프 솔루션 구조도

자료: 람다256, 작성자 재구성

¹¹ Application Programming Interface, 운영체제에서 동작하는 프로그램을 쉽게 만들 수 있도록 화면 구성이나 프로그램 동작에 필요한 각종 함수를 모아놓은 것을 의미



- O 각 거래소는 베이파이바스프 엔클레이브 서버를 통해 전송하고 수신하는 다양한 데이터를 보관하기 위해 별도의 데이터베이스 구축이 필요
 - 총 5개의 데이터 테이블이 필요하며 테이블 내 주요 데이터는 표6과 같음
 - Verification : 사용자 신원 확인 API 요청과 응답 관련 데이터를 저장하는 테이블로, 가상자산 거래 관련 주요 데이터도 동시에 저장됨
 - Pre_screenings : 사용자의 가상자산 계좌번호(지갑 주소)의 위험도에 대한 사전심사 API 요청과 응답 관련 데이터를 저장하는 테이블
 - Counter_party_keys : 개인정보를 암호화하는 데 사용되는 상대방 VASP 공개키를 저장하는 테이블
 - Own_keys : 개인정보를 암호화하는 데 사용되는 본인 기관 VASP의 공개키와 개인키를 저장하는 테이블로, 개인키는 암호화되어 저장됨
 - Commands: 비동기화 상태인 API의 중간 요청 관련 데이터를 저장하는 테이블
 - 사용자 신원 확인과 가상자산 거래 관련 주요 정보는 대부분 Verification 테이블에 저장 되므로 향후 자금 이동 추적에는 해당 테이블의 데이터가 주로 이용될 전망
 - 임계값 초과 여부에서 보듯 100만 원 이하 거래 데이터도 보관할 것으로 예상됨

[표 6] 베리파이바스프 솔루션 운영을 위한 필요 데이터

| [- 0] "-1 1 1 - 2 1 2 2 0 2 1 2 2 - 1 1 1 1 | | |
|---|---|--|
| 테이블명 | 주요 데이터 | |
| | • 신원 확인 ID, 신원 확인 UUID ¹² , 신원 확인 결과, 기호(가상자산 종류), | |
| | • 금액(가상자산 규모), 거래가격, 거래통화, 거래시간, 임계값 초과 여부, | |
| Verification | • TX Hash ¹³ , 송금기관 ID, 송금인 계좌번호(지갑 주소), 송금인 정보, | |
| | • 송금기관 정보, 수취기관 ID, 수취인 계좌번호(지갑 주소), 수취인 정보, | |
| | • 수취기관 정보, 확인시간, 송금일, 데이터 생성일 등 | |
| • Pre_screenings | • 사전심사 요청 ID, 가상자산 종류, 계좌번호(지갑 주소), 위험 등급 등 | |
| • Counter_party_keys | •키 ID, 키 유형, 상대방 VASP ID, 키 식별자, 상대방의 공개키 등 | |
| Own_keys | •키 ID, 키 유형, 키 식별자, 공개키, 개인키 등 | |
| • Commands | • 명령 ID, 명령 유형, 명령 본문, 명령 상태 등 | |
| · · · · · · · · · · · · · · · · · · · | | |

자료: 람다256, 작성자 재구성

★ KB 금융지주 경영연구소

¹² Universally Unique IDentifier, 범용 고유 식별자. 소프트웨어 구축에 쓰이는 식별자 표준으로 개방 소프트웨어 재단이 분산 컴퓨팅 환경의 일부로 표준화함

¹³ Transaction ID라고도 불리며 가상자산 거래나 이동 과정에서 문제가 발생할 경우, 해당 코드를 활용해 위치 추적 이 가능(택배 운송장 번호와 유사)



- 이 한편 코드는 원래 블록체인 기반 솔루션으로 개발되었으나 국내 최대 가상자산 거래소 업비 트와 거래를 연동하고 고객 불편함을 해소하기 위해 비블록체인으로 재개발(기존 블록체인 솔루션은 향후 해외 거래소를 중심으로 확장한다는 계획)
 - 블록체인 기반 솔루션: 중재자 없이 각 거래소가 직접 신원 확인과 가상자산 송금 관련 데 이터를 주고받으며 거래가 끝나면 거래소 데이터베이스에 해당 데이터를 저장하고 일치 여부를 확인
 - 비블록체인 기반 솔루션: 구조도(아키텍처), API, 데이터 등 다양한 정보를 외부에 일체 공개하지 않고 있지만, 솔루션 구조는 비블록체 방식을 채택한 베리파이바스프와 유사할 것으로 예상
- O 금융정보분석원이 자금세탁 관련 자료를 요청할 경우 베리파이바스프와 코드 솔루션이 제공하는 데이터의 차이는 없겠지만, 시스템이나 데이터 관리 측면에서는 비블록체인 방식인 베리파이바스프가 더 용이할 것으로 전망
 - 실제로 코드 솔루션의 거래 연동이 기술적으로 더 어렵고 불편하다는 것이 업계의 중론. 한편 시간 문제일 뿐 국내외 주요 거래소는 대부분 베리파이바스프와 코드 솔루션을 모두 도입할 것이라는 의견도 지배적



[그림 6] 코드의 블록체인 기반 솔루션 프로세스

자료: 코드



- O 트래블룰 적용을 통해 사용자의 신원 확인과 가상자산 거래 관련 다양한 데이터를 보관함에 도 불구하고 여전히 한계점이 존재
 - 트래블룰의 적용 대상 기관이 국내 거래소로 한정되다 보니 메타마스크, 카카오클립 등 개 인 지갑과 해외 거래소를 이용하는 경우 자금 이동 추적이 사실상 불가능
 - 특히 개인 지갑-개인 지갑, 개인 지갑-해외 거래소 및 해외 거래소 간 가상자산 이동 과 해외 거래소를 통한 가상자산의 현금화 데이터는 사실상 국내에서 파악이 어려움
 - 실제로 얼마 전 루나와 테라의 가격 폭락 당시 테라폼랩스 권도형 대표가 대량의 비트 코인을 해외 거래소로 이전했으나, 해외 거래소 협조가 없으면 이후 비트코인 경로 파 악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관련 수사는 지지부진한 상황

■ 시사점

- O 한국이 세계 최초로 가상자산 거래에 트래블룰을 적용한 것은 가상자산 산업을 제도권으로 편입하는 계기가 되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음
 - 가상자산의 이동 경로를 추적하고 관련 범죄를 예방하는 측면에서는 매우 효과적
 - 국내 대부분의 가상자산 투자자가 국내 거래소를 이용하는 상황에서 트래블룰 의무 시 행은 자금 이동 추적에 긍정적으로 작용할 전망
 - 향후 가상자산 시장에 대한 신뢰도가 상승하고 인식이 개선되면 장기적으로 해외 시장 처럼 기관투자자의 대형 투자가 활발해질 것이라는 기대도 나오고 있지만, 이를 위해 서는 루나와 테라 사태로 실종된 신뢰도 회복이 우선
 - 현재 국내 트래블룰은 관련 표준안이나 최소한의 가이드라인이 부재해 투자 심리를 위축시 키고 있음
 - 트래블룰의 자금세탁 방지 효과에 대해 의문을 제기하는 전문가도 존재. 자금세탁을 시도하는 세력들은 수백억 원 이상 대규모 자금을 다루는데 '100만 원 이상'이라는 트 래블룰 적용 기준 금액은 너무 낮아 개인 투자자의 일반 거래에서는 오히려 불편함이 늘었다는 의견
 - 더불어 현재 국내 트래블룰 관련 제도에서 허점으로 꼽히는 해외 거래소와 개인 지갑 사이 거래와 관련한 명확한 기준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제기
 - 이에 따라 금융위원회는 올 상반기 전문가와 함께 태스크포스팀을 구성하고 트래블룰 개선 안을 마련할 계획이며, 지난해 10월 FATF의 트래블룰 수정 권고안이 주된 논의안에 반영 될 것이라고 밝힘. 특금법 시행령 개정안과 트래블룰 수정 권고안 추진 관련 주요 이슈는 표7과 같음



[표 7] 특금법 시행령 개정안과 트래블룰 수정 권고안 추진 관련 주요 이슈

| 이슈 | 주요 내용 |
|--------------------------------------|--|
| 해외 거래소의 정확한 정의 | • 현재의 특금법상 해외 거래소의 경우 실명 계좌 등 여러 문제로 국내에서는 가상자산 영업이 불가능한 구조이지만, 국내 거래소가 입출금이 가능한 해외 거래소를 추가해 특금법 영향을 받지 않고 실질적인 영업을 진행 ⇒ 정부는 해외 거래소에 대한 정확한 정의와 국내 영업을 위한 필요조건을 특 금법에 명시할 필요가 있음. 이와 관련한 규정이 없고 현재처럼 해외 거래소 와의 거래를 임시로 허용하는 것은 편법이자 불법 |
| 국내 거래소와 거래 가능한 해외 거래소 선정 기준 | 국내 주요 거래소는 거래 가능한 해외 거래소 선정 기준을 회사의 내부 방침으로 결정해 혼란이 발생하고 있으며, 해외 거래소에 대한 위험평가 심사를 완료했다는 원론적인 입장 외에는 구체적인 기준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음 ⇒ 특금법에서 구체적인 위험평가 기준을 제시해 선정 타당성을 확보하고 해외 거래소에 대한 효율적인 사후관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조치해야 함 |
| 화이트리스트 선정 기준 | 일본의 화이트리스트는 거래소 요청에 따라 거래 가능한 가상자산을 금융청이 사전에 심사해 허가를 내주는 반면, 국내의 화이트리스트는 거래소의 이해관 계에 따라 결정되는 입출금을 위한 사전 등록 제도에 불과 ⇒ 해외 거래소 선정 기준과 동일하게 구체적인 선정 기준 명시가 필요 |
| 트래블룰 솔루션의 표준화 | 트래블룰 적용 이후 업비트의 베리파이바스프와 빗썸 중심의 코드 간 거래 연동이 한 달 동안 지연되며 가상자산의 가격 왜곡 등으로 투자자의 많은 피해가 발생 → 대형 거래소 의견이 강하게 작용할 수밖에 없는 구조는 솔루션 표준화 부재가 가장 큰 이유이며 정부 차원의 표준화 모델 수립이 필요 |
| 거래소와 개인 지갑 사이의 거래 | FATF의 최신 개선안에도 거래소와 개인 지갑 사이 거래는 트래블룰을 적용하지 않는 것으로 명시되어 있지만, 가상자산 거래량이 증가할수록 개인 지갑과의 거래와 관련한 규제 필요성은 증가할 전망 ⇒ 2월에 개최된 정보보호 관련 콘퍼런스에서 금융정보분석원 제도운영기획관은을 하반기에 거래소와 개인 지갑 간 거래에도 트래블룰을 적용하는 내용(기준금액 100만 원 이상)으로 법령 개정에 나설 것을 시사 |
| 가상자산 개념 | • 현재 특금법 내 가상자산 개념은 암호화폐 중심으로 서술되어 있는 반면 가상 자산 종류가 NFT, CBDC, 증권형 토큰 등으로 다양화됨 ⇒ 향후 암호화폐 외에 다양한 가상자산 거래에 대비하기 위해 특금법상 가상자 산 개념에 대한 정의도 주요 이슈 중 하나 |

자료: 작성자 재구성

<연구위원 박교순(kyoyahoo@kbfg.com, 02-2073-5766)>